

학생진로상담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6.3.1
 개정 2017.3.1
 개정 2017.10.16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진로상담센터(이하 "본 센터"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 및 업무) 본 센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지도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인성, 적성 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개인 및 집단 실시 및 해석
2. 개인 및 집단 상담
3. 재학생 인성 및 진로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최
4. 교내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상담교육 훈련
5. 기타 상담실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) ①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상담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본 센터의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본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③ 상담원은 상담관련 전공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담관련 자격증을 갖춘 전문인으로 하며, 센터장의 명을 받아 본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상담업무를 시행한다.
- ④ 센터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 전문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상담위원회) 상담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사업계획 및 평가) ① 본 센터는 각 호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해연도 실적을 자체평가하고,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.

1. 개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
2. 학생진로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
3.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

② 당해연도 실적에 대한 평가 실행 시, 필요한 경우 상담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.

제6조(센터 이용 학생의 권리 및 정보의 관리) ① 본 센터 이용 학생은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,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,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, 상담계획에 참여할 권리, 어떤 서비스는 거절할 권리 그리고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 본 센터 이용 학생은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. 다만 본 센터 이용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 없이도 상담소 이용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.

③ 본 센터 이용 학생이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본인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해가되지 않는다면 응한다. 다만 센터 이용 학생과 관련된 타인의 사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